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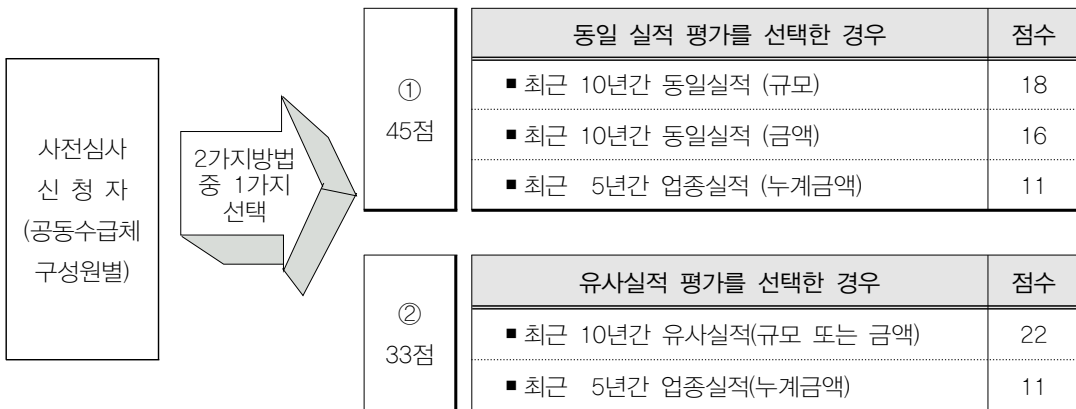
지방계약법 조문별 해설

행정안전부 서기관 | 최 두 선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서도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한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 및 적격심사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공사의 경우 200억원 이상 17개 공종의 공사와 300억원 이상 공사의 최저가 낙찰대상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 호에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기술적 이행능력 심사분야인 시공경험 평가항목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시공경험 항목의 평가는 아래 우선 입찰참가자가 아래 2가지 시공경험 평가방법 중 어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심사 자료를 제출한다.



시공경험을 평가하는 공사의 내용 중 공사의 유형을 보면 아래와 같으며 발주자는 아래 공사의 유형에 따라 평가를 다르게 하도록 하고 있다.

| 구 분 | 공 종 명 |
|--------|--|
| I 유형 | 1) 교량 7) 철도 8) 지하철 9) 터널공사 |
| II 유형 | 11) 쓰레기소각로 12) 폐수종말처리장 13) 하수종말처리장 |
| III 유형 | 2) 공항 6) 항만 14) 준설 17) 관람집회시설 18) 전시시설 19) 공용의 청사 20) 공용주택 |

위 유형에 분류되지 않은 공종(8개)은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 입찰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 유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우선 실적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최근 10년간 동일 또는 유사 실적의 평가는 당해공사 평가기준규모(금액) 대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동일 또는 유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text{동일 또는 유사실적 평가} = \frac{\text{공동수급체(A)실적(규모 또는 금액)} \times \text{시공비율} + \text{공동수급체(B)} \times \text{시공비율} \dots}{\text{평가기준 규모(금액)}} \times 100(\%)$$

이 경우 평가기준 규모(금액)은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의 규모(또는 추정금액)로 하며 다만, 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현재 발주하는 공사 규모(또는 추정금액)의 1배 이하에서 0.7배 이상의 범위내 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으며 단독 입찰인 경우 평가기준 규모(금액) 대비 그 업체의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최근 5년간 시공실적 평가시 실적계수는 당해공사의 평가기준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5)대비 공동수급체 각각의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산정한다.

$$\begin{aligned} \text{■ 실적계수} &= \frac{\text{실적합계(A업체)} \times \text{시공비율} + \text{실적합계(B업체)} \times \text{시공비율} \dots}{\{(\text{추정가격} + \text{부가가치세}) \times 5\}} \\ \text{■ 평 점} &= \text{실적계수} \times 11\text{점} \end{aligned}$$

최근 5년간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복합 업종인 경우는 공사에정금액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主) 업종만을 평가하며 주(主) 업종은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업종이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업종, 즉 일반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등을 각각 업종이라고 한다.

실적을 평가받는 업체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서류제출 마감일 이전까지 해당기관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련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서류제출 마감일 이전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가 연도단위(1. 1~12.31)로 되지 않은 실적은 사전심사 신청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도 내에 일부만 누락된 실적은 인정하지 않고 협회의 증명서만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실적 인정 기준 시점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검사(동일 실적의 기성부분을 유사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성검사)가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최근 5년간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대한건설협회에서 확정된 최근 연도부터 역산하여 5년간 실적을 연도단위(1. 1~12.31)로 인정·평가한다. 공사 실적심사시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당해공사에 포함된 교량 또는 터널이 상·하행선으로 구조물이 각각 분리된 경우에는 각각 실적을 인정하여 합산한 규모(또는 금액)를 기준으로 심사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단, 동일한 단위구조물(체)로서 상·하행선 연장이 다른 경우에는 합산연장의 1/2로 한다.
- 교량공사에 있어서 심사대상 교량과 비심사대상이 혼합된 경우 평가기준규모 또는 금액은 심사대상요건 이상이 되는 각 교량을 합산하여 적용하되 각 심사대상 교량의 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위등급으로 적용한다.
- 지하철공사의 경우 연장은 교행선에 관계없이 시점과 종점구간으로 한다.
- 항만공사의 경우 외곽시설과 계류시설이 복합된 경우 복합공사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을 사전심사대상으로 한다.
- 용도가 복합된 건물의 실적은 건축법령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용부분 등은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1) 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부분은 당해건물의 주용도에 포함(용도별로 공용부분이 구분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에도 주차장은 공용부분으로 본다)
 - (2) 근린생활시설은 당해건물의 주 용도에 포함한다.(다만, 근린생활시설이 주 용도인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 (3) 동일건물에서 각 용도별 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시설은 당해 건물의 주용도 시설에 포함하며 주 용도란 동일 건물 내에서 면적이 큰 시설을 말한다.
-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이 기준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령의 규정에 준한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는 1건으로 발주된 공사중 16층 이상인 건물(동)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 당해공사가 복합 공종으로 구성되어 규모(길이, 면적, 용량 등)로 비교가 곤란한 경우에는 금액으로 비교한다.

다음은 시공경험 심사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시공경험 심사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입찰자가 동일 실적을 제출한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여기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공사유형별로 평가기준이 다르며 1유형, 2유형, 제3유형에 대하여는 이미 첫 페이지에서 표로 설명이 된바 있다.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등급(추정가격 기준) | | | 평점 |
|--------------------------------------|--|------|---|--|--|-------------------------------------|
| | | | I 유형 | II 유형 | III 유형 | |
| 가.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1) 규모 (길이 또는 용량 및 면적 등 기준) | 18.0 | A.200%이상 B.165%이상 C.110%이상 D. 55%이상 E. 15%이상 | A.200%이상 B.150%이상 C.100%이상 D. 50%이상 E. 10%이상 | A.180%이상 B.135%이상 C. 90%이상 D. 45%이상 E. 10%이상 | 18.0 15.9 13.9 11.9 9.9 |
| | 2) 금액(실적인정 규모이 상공사(종)의 각각 준 공금액의 합계액) : 관급자재 포함 | 16.0 | A.200%이상 B.165%이상 C.110%이상 D. 55%이상 E. 15%이상 | A.200%이상 B.150%이상 C.100%이상 D. 50%이상 E. 10%이상 | A.180%이상 B.135%이상 C. 90%이상 D. 45%이상 E. 10%이상 | 16.0 14.2 12.4 10.6 8.8 |
| 나. 최근 5년간 공사 실적 | 4) 입찰공고시 해당업종 명시 | 1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점 = 11 × 실적계수 ■ 실적계수 = $\frac{\text{실적합계액}}{(\text{추정가격}+\text{부가가치세})\times 5}$ | | | |

동일한 종류의 실적인정 범위는 다음페이지에서 표로 설명되어 있으며 동일 실적인정 범위가 없거나 이 기준으로 적용이 곤란한 경우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동일 실적인정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공사실적은 복합업종인 경우 공사에정금액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비율을 차지하는 주(主)업종의 실적만을 평가한다. 이 경우 공사에정금액, 주(主)업종 및 주(主)업종의 공사에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별도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사전심사의 참가자가 『유사실적』을 제출한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등급(추정가격 기준) | | | 평점 |
|--------------------------------|---------------------------|------|---|----------|----------|------|
| | | | I 유형 | II 유형 | III 유형 | |
| 가.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 금액 또는 규모 (계약담당자가 선택) | 22.0 | A.200%이상 | A.200%이상 | A.180%이상 | 22.0 |
| | | | B.165%이상 | B.150%이상 | B.135%이상 | 19.5 |
| | | | C.110%이상 | C.100%이상 | C. 90%이상 | 17.0 |
| | | | D. 55%이상 | D. 50%이상 | D. 45%이상 | 14.5 |
| | | | E. 15%이상 | E. 10%이상 | E. 10%이상 | 12.1 |
| 나. 최근 5년간 공사 실적 | 복합업종인 경우 입찰공고시 평가대상 업종 명시 | 11.0 | ■ 평점 = 11 × 실적계수 ■ 실적계수 = $\frac{\text{실적합계액}}{(\text{추정가격} + \text{부가가치세}) \times 5}$ | | |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유사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규모로 평가할 지 아니면 금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경쟁성, 공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선택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범위)

동일실적과 유사실적의 인정범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공 종 | 구 분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
|---|---|---|----------------------------|
| 1) 교 량 | A. | ○ 길이200m이상 A등급 교량 (단 현수교, 사장교는 100m이상) | ○ 길이200m이상 B등급 교량 |
| | ·현수교, 사장교 ·경간 200m 이상포함교량 | | |
| | B. | | |
|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 ·경간 200m 미만 100m이상 포함교량 | ○ 길이200m이상 A·B등급 교량 (단 현수교, 사장교는 100m이상) | | |
| | C. | ○ 길이100m이상 A·B·C등급 교량 | |
| ·경간 50m 이상 포함 교량, 1,000m이상의 일반교량(경간 10m이상) | | | |

| 구 분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
|-----------------------------------|---|---|
| 공 종 | | |
| D. ·500m이상의 일반교량 (경간 10m이상) | ○ 길이100m이상 A·B·C·D등급 교량 | |
| 2) 공항 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 ○ 10,000㎡ 이상의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공사 | ○ 도로폭 4차로 이상과 길이 1km이상이 포함된 고속도로, 국도의 신설공사(확,포장공사 포함) ※ 면적으로 환산 적용 |
| 나. 청사 (여객 및 화물터미널) | ○ 공항청사,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항만 및 종합여객시설로서 3,000㎡이상의 건축공사 | ○ 3,000㎡ 이상의 지하철 역사 |
| 3) 댐 | 입찰공고에서 정한다. | |
| 4)에너지저장시설공사 | 입찰공고에서 정한다. | |
| 5) 간 척 | 입찰공고에서 정한다. | |
| 6) 항 만 가. 계류시설 | ○ 30억원 이상의 계류시설 ※ 준설, 매립 제외 | ○ 30억원 이상의 외곽시설 공사 ※ 준설, 매립 제외 |
| 나. 외곽시설 | ○ 30억원 이상의 외곽시설 공사 ※준설, 매립 제외 | ○ 30억원 이상의 계류시설 ※ 준설, 매립 제외 |
| 7) 철 도 | ○ 500m 이상의 철도·지상구간 지하철공사 | - |
| 8) 지하철(도시철도) | ○ 100m 이상의 지하구간 지하철공사 | ○ 철도·도로의 터널부분공사 |
| 9) 터널공사 | ○ 200m 이상의 교통터널공사 (지하차도공사 제외) | |
| 10) 발전소 |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 |
| 11) 쓰레기소각로 | ○ 소각단위 30톤/일 이상의 쓰레기 소각로 ■ 소각단위 용량톤수 : 쓰레기 1일 소각톤수 | - |

| 구 분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
|--|--|--|
| 12) 폐수종말처리장 가. 폐수종말처리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 시설 |
| 나. 고도처리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 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 - |
| 13) 하수종말처리장 가. 하수종말처리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 시설 |
| 나. 고도처리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 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 - |
| 14) 준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억원 이상의 준설공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설장비에 의한 해상 준설토 매립 공사 |
| 15) 관람집회 시설 가. 공연장, 집회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3,000㎡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3,000㎡ 이상인 전시시설 |
| 나. 관람장, 관람용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운동장·체육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3,000㎡ 이상인 관람장, 운동장, 체육관 | - |
| 16) 전시시설(전시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3,000㎡ 이상인 전시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3,000㎡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
| 17) 송 전 |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 |
| 18) 변 전 |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 |

다음은 기술능력평가기준과 평가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평가 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다.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등급 | 평점 |
|---|--|------|---|---------------------------------|
| 가.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업체 보유 인력으로 평가) |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 14.0 |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 14.0 11.9 9.8 7.7 |
| | 2) 일반기술자 | 10.0 | 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9인 이상) C. 10인이상(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7.8 5.5 |
| | 3) 시공지원 기술자 | 6.0 | A. 4인이상(2인 이상) B. 4인미만(2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6.0 3.3 |
| 나. 신기술개발·활용 실적(공동수급체는 대표자만 평가) | 4) 신기술 개발 | 1.0 | A. 2건 이상 B. 1건 | 1.0 0.6 |
| | 5) 신기술 활용 실적 | 3.0 | A.60억원 이상 B.6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 3.0 2.6 2.2 2.0 |
| 다.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 6) 당해공사의 동일실적 이상으로 준공기한 경과정도 | 3.0 | A. 2년이내 시공실적 B. 5년이내 시공실적 C. 7년이내 시공실적 D.10년이내 시공실적 | 3.0 2.5 2.0 1.6 |
| 라.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 7) 업체평균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 | 8.0 | A.20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 8.0 7.1 6.2 5.3 4.4 |

- 주) 1. '나'목은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술 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다'목에 의한 기간계산은 발주공사의 입찰공고일기준 준공일(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는 총공사 최종준공일) 까지의 기간으로 평가하며 당해 발주기관에 제출된 실적중 가장 최근에 준공한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음은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의한다.
- ㉡ 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 ㉢ 법인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 ㉣ 활용실적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에 의한다.
- ㉤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직전년도까지의 활용된 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공동수급체의 심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 ㉠ 기술능력 평가의 심사항목중 기술자 보유평가는 공동수급체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 단독 입찰인 경우 보유내용대로 평가한다.
- ㉡ 기술개발투자비용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평가한다.

증명서 제출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자의 종류 및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에 의하며, 해당 공종 경력 기술자, 일반 및 시공지원기술자의 증명은 입찰공고일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거나 동 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경력기술자의 심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반기술자로서 당해 사전심사 대상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서 3년 이상(자격취득 前, 後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구 분 | 적 용 기 준 |
|--------|--|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 경력계수 |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
| 관리능력계수 | 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 의거 설립된 『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산정예시

〈 기술자 보유 〉

- 특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고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중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특급기술자 : 1인 × 1.0(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1.1
 - 고급기술자 : 1인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1.1
 - 중급기술자 : 1인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1.1
- ⇒ 1.1(특급) + 1.1(고급) + 1.1(중급) = 3.3(B등급)

다음은 시공평가 결과에 대한 심사방법 중 기본원칙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 당해 입찰참가자격 심사를 위해 제출한 시공실적(동일 또는 유사실적)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한다.
-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모두의 공사실적에 대한 시공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결과에 해당하는 등급을 적용한다.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 결과로 심사한다.
- 시공경험중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 대상 공사로서 평가자료가 없는 경우 80점을 적용한다.
- ㉡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사 또는 해외에서 시공한 공사는 90점으로 평가한다.

다음은 시공평가 결과의 심사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자.

| 배 점 | 시 공 평 가 결 과 | | 평 점 |
|------|-------------|----------|------|
| | Ⅱ유형공사 | Ⅰ,Ⅲ유형공사 | |
| 10.0 | A. 90점이상 | A. 90점이상 | 10.0 |
| | B. 85점이상 | B. 85점이상 | 9.0 |
| | C. 80점이상 | C. 75점이상 | 8.0 |
| | D. 75점이상 | D. 70점미만 | 7.0 |

시공 평가시 제출서류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결과 자료로서 발주기관의 장이 발급한 증명서를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다.

다음은 시공 평가시 감점처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시공평가 대상 공사의 하자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연간 2회 이상 실시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실적의 시공평가 결과 점수에서 2점 감점 처리한다.

다음은 신인도 평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우선 신인도 평가시 기본원칙은

단독입찰인 경우 사전심사 대상자의 신인도 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하고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신인도 평가 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심사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다.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평 가 방 법 | 최고(저) 한도 |
|--|----------|-------------------|-------------|
| 1. 최근 1년간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2.0 | 평점 90점이상인 자 | 2 |
| | 1.5 | 평점 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 |
| | 1.0 | 평점 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 |
| | 0.5 | 평점 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 |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평 가 방 법 | 최고(저) 한도 | |
|--|---|---|----------------------------------|------|
| 2.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처분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자 | -0.5 | 3천만원미만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2 | |
| | -1 | 3천만원이상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
| | -2.0 | 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
| 3.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3 | |
| | -2.0 |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
| | -3.0 |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
| 4. 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업체별 건설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미달하게 된 자 | 2.0 | 평균재해율 0.4배이하 | 2 | |
| | 1.0 | 평균재해율 0.7배이하 | | |
| | 0. | 평균재해율 1.0배이하 | | |
| 5.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 지방계약법령 또는 다른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자,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 |
| 6.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5)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한 자 | -0.5 |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 |
| | | -1.0 |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 | 6)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 -0.5 |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 |
| | | -1.0 |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 7. 부실벌점 | 7) 건설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 -1 | 2점이상 10점미만 | -3.0 |
| | | -2.0 | 10점이상 15점미만 | |
| | | -3.0 | 15점 이상 | |

| 심사항목 | | 배점 한도 | 평 가 방 법 | 최고(저) 한도 |
|-------|---|----------|------------|-------------|
| 8. 기타 | 8) 최근 1년간 당해 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공사입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켜 서면 주의통보를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0.5 | 2회이상 받은 경우 | -1.0 |
| | | -1.0 | 4회이상 받은 경우 | |

다음은 신인도 평가시 유의사항을 살펴보자.

- ① 업종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 ② 1개의 업체가 신인도평가시 동일 심사 항목 내에서 가점 또는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절대값으로서 가장 큰 평점만 적용한다.
 - ③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적용은 형이 확정된 사항을 당해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재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④ 각 심사항목의 신인도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심사항목(항목 5 및 7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당해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⑤ 관련법령에 의하여 사전 심사신청자가 분할, 합병, 사업양수도를 한 경우에 신인도 평가항목은 그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자가 각각 승계된 것으로 본다.
- ※ 합병의 경우 합병후 신설된 업체, 분할의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 사업양수도의 경우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를 말함

이상으로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심사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며 적격심사대상인 경우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하고 최저가 심사대상공사는 최저가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다음호에서 계속하기로 하자. 🌻

